[별표 3]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서류·현장) 세부기준

분류	평가항목	심사항목
일반 (서류)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o 신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일치 및 법인 여부 확인
	o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사업범위에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및 평가업무를 포함한 법인 여부	 정관에 설립목적 또는 사업범위 내에 정보보호제품 시험 및 평가업무 수행에 관련한 내용 포함 여부 확인 정보보호제품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나 IT제품 시험 및 평가 업무 수행 내용 포함도 허용
	o 기관 운용 건전성 여부	o 일반현황, 기관소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추진계획, 기타 추진업무, 기대효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o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3억원 이상일 것 ※ 정부출연,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순수 민간법인만 해당
	o 정보보호제품을 생산·개발·유통·판 매하는 법인 여부	 ○ 정보보호제품을 생산·개발·유통·판매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확인 - 사업자 등록증에 정보보호제품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나 IT제품 표기도 허용 - 단, 온전한 정보보호제품이 아닌 일부 모듈(예, 암호모듈 등)의 개발·유통·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우선 허용하나 향후 성능평가시 자사의 모듈(예, 암호모듈 등)을 탑재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이를 어길시 성능평가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허용
조직 및 인력 (서류)	o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 보유여부	 ○ 국제표준(ISO/IEC 17025)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매뉴얼을 통한 성능평가의 적절성 여부 확인 ※ 인정분야(정보보호시스템 추가기술요건" 혹은 RFC2544 와 RFC3511) 확인 ※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에서 시험기관을 검색하여 인정규격 확인 (https://www.kolas.go.kr) ※ 공인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만료된 신청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최소 잔여 유효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 재지정 신청 여부 확인하고 재지정 증빙자료 제출 시점부터 당해년말까지 재지정완료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성능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보유 여부 및 최신 여부 확인
	o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제 3자 기관 여부	o 시험 또는 교정의뢰를 활용하는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판단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 ※ 등기부등본(혹은 사업자등록증) 및 품질매뉴얼(기관 사업목적 및 법적 지위 등) 확인 - 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 제품 개발 관련 내용 존재 확인 - 품질매뉴얼 : 제3자 서비스 관련 문구 확인 o 방지대책의 합리성 및 적용 가능성과 해당 내용의 관련자 공유 여부 확인